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

정책실명제 등록번호	2016-22	담당부서 작성자	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 (정명환 / 042-481-4928)
정 책 명	문화재 불법반출 예방활동 내실화		
사업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재 국외 밀반출 방지 관련 제도정비를 통한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범단속의 효율 극대화</li> </ul> </li> <li>○ 추진기간 : 2016.1월 ~ 2016.12월</li> <li>○ 총사업비 : 비예산</li> <li>○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재의 불법 국외밀반출 차단을 위한 문화재감정관실 역량강화 : 워크숍 개최</li> <li>- 문화재사범단속 역량강화를 위한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관 전문성 습득 교육과정 확대</li> <li>-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</li> </ul> </li> </ul>		
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추진경과</li> <li>○ 문화재감정관실 워크숍 개최(16.10.2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 시 : '16. 10. 25.(화), 14:00~20:00</li> <li>- 장 소 : 대전청사 중회의실(2동 205호)</li> <li>- 참석인원 : 28명 (문화재정책국장, 안전기준과장 등 8명, 감정위원 20명)</li> <li>-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감정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</li> <li>· 업무전담팀별 업무(연구) 진행내용 보고 및 토의</li> <li>· 사전예약감정제도 실시 현황과 활성화 방안</li> <li>· 기타 감정관실 관련 현안사항 토의 등</li> </ul> </li> <li>- 향후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6년도 감정관실 주요업무 및 업무전담팀별 사업 마무리</li> <li>· 감정위원 순환근무 시행('17. 1월)</li> <li>· 감정위원 증원, 예산 확보 등 추진(지속)</li> <li>· 사전예약감정제도 등 유관기관 홍보, 협의사항 추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문화재전담수사관 문화재과정 운영(2016. 10. 24 ~ 2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육목적 : 문화재 도난, 도굴, 해외밀반출 및 불법거래</li> </ul> </li> </ul>		

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재 전담수사관의 문화유산 직무교육 과정 개설 운영

- 추진경위 : 경찰청 문화유산 수사자문위원회 회의시 문화재 전담수사관 대상 문화유산 직무 교육 실시 필요성 합의 ('16.6.28)
- 교육대상 :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소속 문화재 전담 수사관 30여명
- 교육장소 :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

○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국회의원 발의(노웅래의원, 2016.12.5)

- 개정내용 :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
- 개정목적
  -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는 자격요건, 매매장부 검인 외에는 실효성 측면에서 신고제와 차이가 없음에도 국민경제활동의 규제로 작용해 왔음.
  - 문화재는 그 속성상 영세업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.
  - 이에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영세업자를 제도권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, 진입장벽을 허물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